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11. 4.(금) 조간 2022. 11. 3.(목) 11:00	배포 일시	2022. 11. 3.(목) 06:00
담당 부서 <총괄>	어촌양식정책관 수산물방사능안전대응반	책임자	과 장 최장원 (044-200-5940)
		담당자	사무관 홍성현 (044-200-5641)

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 해수부, 해경, 지자체,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11.7.(월)부터 3주간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김장철을 맞이하여 11월 7일(월)부터 11월 25일(금)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특별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으로 하여금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수산물 수입·유통업체에는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의무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설·추석·김장철 등 성수기에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 (유통·판매·가공 등) 모든 수산물

(음식점 내 표시) 넙치,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15개 품목)

** 유통이력 대상품목 :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천일염(식용),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묵장어, 활방어(17개 품목)

이번 김장철 특별점검은 11월 7일(월)부터 11월 25일(금)까지 3주간 이루어지며,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김장철 소비가 증가하는 새우젓, 멸치액젓 등 젓갈류와 천일염 등을 주로 점검하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역시 김장철 수입이 늘어나는 염장새우, 천일염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단체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800여 명과 정부 점검반(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경 등)이 참여한다.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엄격한 단속과 지속적인 지도·계도 등 민·관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어 왔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을 보셨다면 지체없이 신고전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수산물원산지표시’를 통해 제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해양수산부 수산물방사능안전대응반	책임자	과 장	최장원 (044-200-5940)
		담당자	사무관	홍성현 (044-200-5481)
담당 부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안전과	책임자	과 장	장옥진 (051-400-5690)
		담당자	사무관	오영진 (051-400-5650)
담당 부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책임자	과 장	강거영 (051-400-5750)
		담당자	사무관	박덕만 (051-400-5770)

참고1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개요

□ 개요 (법적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 도입시기 : 수입수산물('94), 국산('95), 가공품('96), 소금('11) / 음식점 표시('12년)

□ (대상품목) 일반 유통·판매업 : 모든 수산물, 음식점 : 15개 품목

구 분	대 상 품 목
유통·판매업 (모든 수산물)	식용 가능한 모든 수산물(국내산·수입산) 및 그 가공품
음식점 (15개 품목)	넙치(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 다만,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모두 표시 대상

* '12년(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 '13년(고등어, 명태, 갈치)
→ '17년(오징어, 꽃게, 참조기) → '20년(다랑어, 아귀, 주꾸미)

□ (대상업체) 약 146만 개소(유통, 음식점, 통신판매)

합 계	유통·판매· 가공업소*	음식점** (일반, 휴게, 집단급식소 등)	통신 판매업체
146만개	44만개	89만개	13만개

* 백화점·할인마트·도매시장·전통시장, TV홈쇼핑·인터넷·신문 등 모두 포함

**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휴게·일반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처벌기준) 해수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 지자체, 해경청 등

①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거짓표시, 혼동 우려 또는 혼동 목적으로 손상·변경, 원산지가 다른 품목과 혼합 등

- (5년 내 재범)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 (2년간 2회 이상) 위반 금액의 5배 과징금(최고 3억원 이하)

② 미표시의 경우, ①수산물 및 가공품 등은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②음식점은 품목별 30만원(1차), 60만원(2차), 100만원(3차) 과태료 부과

※ 최근 3년('19~'21) 위반 현황 : 미표시 1,642건(2.2억), 거짓표시 600건(37.5억)

참고2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 개요

□ 개요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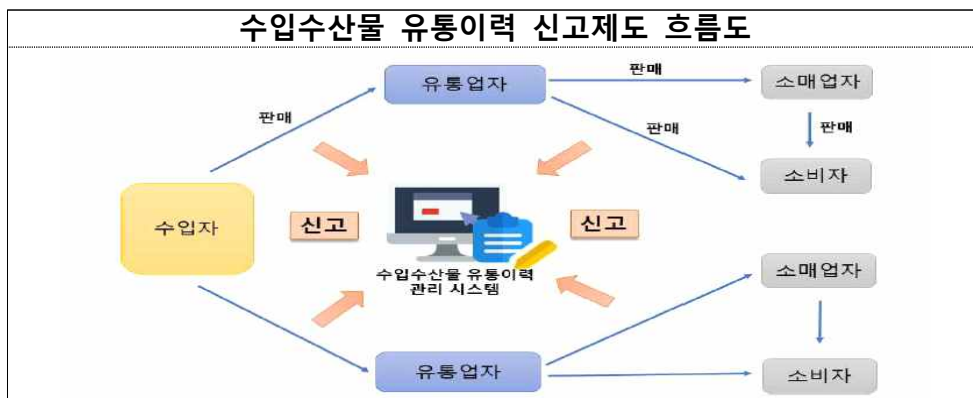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2022-20호)

- 안전이 우려되는 주요 수입 수산물은 유통이력 의무 신고대상*으로 고시하여 수입부터 소매단계(음식점)까지 관리

* 17개 품목: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꽂치, 천일염(식용),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묵장어, 활방어

□ 업무 프로세스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수입·유통업자)가 수입에서 최종 판매까지 거래내역을 신고함으로써 유통이력 추적·관리
 - (신고방법) 전산(유통이력관리시스템)신고 또는 서면신고서 관할지원에 제출
 - (신고기한)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가 양도 후 5일 이내 신고



□ 단속 · 처벌

위반행위	위반횟수별 과태료(단위 : 만원)			
	1회	2회	3회	4회
미신고	50	100	300	500
거짓신고	100	200	400	500
장부·기록 자료 미보관	50	100	300	500
조사·열람·수거 등 거부·방해·기피	50	100	300	300

참고3

수산물 원산지 표시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사진



[사진1] 수산물 원산지 표시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사진



[사진2] 수산물 원산지 표시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사진